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2일

보정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사항 직권 조치일자
이 *택	이 *택 1957-09-10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43번길 (보정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9-19